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4072(본소), 2023나204089(반소) 판결
[공사대금 · 하자보수대금지급 청구의 소]

재판경과

의정부지방법원 2023. 12. 21 선고 2023나204072(본소), 2023나204089(반소) 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가단103245 판결

전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고병철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성

담당변호사 차재일

변론종결 2023. 11. 23.

판결선고 2023. 12. 21.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가단103245(본소), 2021 가단116545(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52,65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81,648,4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나. 피고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55,956,85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8쪽 27행 ‘앞서 본’부터 3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감정인이 시공 상태가 준공도면과 비교하여 콘크리트 두께, 철근 배근 간격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이는 바닥 균열을 발생시키는 중요 요인이라고 의견을 밝힌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를 단순히 콘크리트 무게나 부피로 인해 밀린 것이라거나 타설 후의 평탄화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로 인하여 균열이 발생한 이상 이는 원고 측 시공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12쪽 4행부터 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관련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 제1항, 동법 시행령 별표 4의 규정을 따르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고, 피고는 사용승인일인 2017. 11. 15.로부터 각 공종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의 1년차, 2년차 하자 관련 하자담보책임은 모두 제척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서 정한 건설공사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그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한 하자담보책임을 진다는 하자발생기간을 뜻하는 것이고 제척기간은 아니므로(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다264508 판결 등 참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가 제척기간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설령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선택하여 살펴보더라도,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사실은 하자를 주장하는 측에서 당해 하자가 그 기간 내에 발생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간접사실들을 입증함으로써 이를 추정하도록 함이

상당한데, 앞서 본 증거들 및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하자보수기간을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약정한 점, ② 피고는 2017. 12. 26.부터 2018. 4. 10.까지 내용증명, 이메일, 문자메시지를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가 요청한 보수 항목에는 화장실, 샤워실, 판넬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③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2018. 9. 14.경 하수구 막힘 하자를 보수하고, 2019. 10. 23.경 공장 도어 열쇠 부분을 교체한 점, ④ 피고는 원고의 부분적 보수공사 이후에도 아직 하자가 남아 있다는 이유로 2020. 1. 10. 원고가 교부한 하자보증보험증권에 따라 L 주식회사에 ‘하자보수불이행’을 보험금 청구사유로 기재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기도 한 점, ⑤ 이 사건 공사계약상 하자보수기간은 사용승인일인 2017. 11. 15.로부터 2년인 되는 2019. 11.

15.경까지인데, 원고는 이 사건 본소를 2020. 1. 29. 제기하였고, 피고는 2020. 2. 25.자 답변서를 통해 이 사건 공사에 하자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는바, 하자보수기간의 만료 이후 경과된 기간이 비교적 단기간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에서 하자로 판단한 항목에 대하여는 일응 그 하자가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감정결과 확인된 하자에 대하여 원고의 하자담보책임을 인정하되, 일부 하자가 그 이후 발생 또는 확대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을 책임 제한 단계에서 참작하기로 한다.

라) 또한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지반 높이 확정, 흙다짐, 양생 등 공사 과정을 직접 지휘·감독하였으므로, 바닥 균열 하자 등 이 사건에서 하자로 판단된 항목들은 발주자인 피고 측 지시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감정인이 ‘도면이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들이 공사대금을 평당 단가로 약정하였고, 그 이후 원고가 도면과 달리 시공한 것을 피고가 인지하지 못하였는지 의문이라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을 비롯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서 본 하자가 피고 측 지시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12쪽 9행 ‘라)’를 ‘마)’로, 제12쪽 22행 ‘마)’를 ‘바)’로 각 고친다.

2.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귀옥, 판사 류하나, 판사 옥제영